2021년 테마형사소송법 판례.기출 증보판 1쇄 정오표 (추가)

[1권]
p.47. 문2번 해설㉢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
㉢×: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에서 신속한 판결선고를 위해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각 4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

p.90. 도움말 ▶(검.경 수사권조정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의 내용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
▶검.경 수사권조정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0.2.4. 공포되었으며,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다만, 제312조 제1항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

p.106. 테마23번 해설③을 아래와 같이 수정
③검시조서를 작성(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2항.제3항)※종전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제2권]
p.25. 하단 판례추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 따라서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대판 2020.11.26, 2020도10729).

p.114. 처장추천위원회 ⑤(추천위원회는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의 내용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조 제7항). 개정 2020.12.15.

p.114. 하단, 수사처검사 ①의 내용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
①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 12. 15.)

p.117. 10줄 아래 '수사처장의 재정신청(①~⑦)' 삭제 (개정 2020. 12. 15.)

p.117. 해설 ㉤의 내용과 정답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법 제6조 제2항,제7항) (개정 2020. 12. 15.)
정답③ ⇨ ④

p.118. 해설④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
④ 수사처장의 재정신청권은 삭제되었다.(개정 2020.12.15.)

[제3권]

p.273. 도움말 피의자신문조서 중 '검사작성'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

검사 작성	제312조 제1항 :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작성(형식적 진정성립)+실질적 진정성립 인정+특신상태 증명 12. 경찰승진 ▶ 실질적 진정성립 :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 ▶ 피고인이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규정은 삭제되었다(2020.2.4.) ▶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특신상태) :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대판 1987.3.24, 87도81) 12. 경찰간부, 13. 9급 검찰·마약수사·교정·보호·철도경찰, 12·14. 경찰승진, 15. 순경 2차 ▶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참고인진술조서로 취급(제312조 제4항)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조항인 제312조 제1항은 '적법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다(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주의!)

p.274. 문1번 해설㉣내용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
㉣ × : 영상녹화물이나 그밖의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실질적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제도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제312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제312조 제3항 참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영상녹화물이나 그밖의 객관적 방법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규정이 있었으나(제312조 제2항) 삭제되었다.(개정 2020.2.4.)

p.276. 문3 해설②를 아래 내용으로 수정
② 제312조 제2항은 삭제되었으나, 당시 판례의 내용으로는 타당한 설명이므로 옳는 것으로 처리해둔다.

[제4권]

p.124.
도움말 '부정기형과 정기형'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할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는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판 2020.10.22, 2020도4140 전원합의체).
(예)단기7년 장기15년의 경우 중간형인 11년을 기준으로 함
-대법원은 단기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p.126. 테마27번 해설③내용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
③ 변경된 판례에 의할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135 문13번 해설㉤의 내용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 정답수정
㉤×: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판2020.10.22.2020도4140 전원합의체)
정답② ⇨ ③